

2023년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



가. 개요

대주제: 한국회계학회 50년 성과와 미래

일 자: 2023년 6월 26일(월)~6월 27일(화)

장 소: 라마다프라자 제주

주 최: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한국회계학회

주 관: 한국회계학회

정부회계위원회 세션

[사 회] 조형태 교수(홍익대)

[발표 1]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진태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론〉 김창화 팀장(기획재정부)

[발표 2] 공공부문 자산손상 회계이슈에 관한 연구(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 3] 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 저량-유량 조정을 중심으로(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발표 및 토론 요약

주요 발표 내용

발표 1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진태호 국가회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공표하였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개편은 ‘국가결산의 유용성 제고’를 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 기반의 결산 분석 기능을 확대하고, 국제 흐름에 부합하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결산서 구성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재무제표의 간소화 및 분류체계 개편, 현금흐름표 신설, 주석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상태표는 공시과목 102개, 8페이지에 달하던 기존의 재정상태표를 한 페이지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시 계정과목을 30여 개로 간소화하였으며, 축소된 각 계정과목의 세부 사항은 주석에서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계정과목을 장·단기 구분 없이 통합하고, 자산(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 및 부채(차입부채, 총당부채, 기타부채)의 중간단계 구분을 신설하여 재정상태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재편하였다.

둘째, 국가 재정운영표를 분야별·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개편하였다. 현재의 국가 재정운영표는 부처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국가회계실체 및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는 각 프로그램의 사업별 원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예산의 구조상 프로그램의 상위 항목이 분야이므로, 15대 예산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통해 중앙관서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연계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필수보충정보로 제공되고 있는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 재무제표로 개편하면서, 수익(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 및 비용(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의 분류를 간소화하였다.

셋째, 국가 현금흐름을 운영·투자·재무활동으로 집계하는 현금흐름표를 도입하였다. 현재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총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가 필수보충정보로 공시되고 있으나, 각 활동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어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과 동일하게 국가 활동을 운영·투자·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흐름표를 국가회계법령상 재무제표에 포함하였다. 운영활동은 정상적인 정부 운영에 따른 현금유입 및 유출을 말하며, 투자활동은 투자증권, 유형자산 등 효익 창출 또는 미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유출입, 재무활동은 국채발행, 차입 등에 따른 현금 유입 및 국채상환, 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을 말한다.

넷째,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앞서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세부 정보를 주석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는 방향으로 주석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8개 항목의 주석을 20여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정과목별 상세 내용, 주요 회계처리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까지 국가회계법령을 개정하고, 이후 2024년까지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안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작성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내용

지정토론 김창화 국가결산체계개편팀장, 기획재정부

국가결산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는 크게 국가회계법령 개정과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개편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국가회계법령 개정의 경우, 기존의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상 재무제표가 현금흐름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58개 중 개정이 소요되는 24개의 관련 조문과, 「국가회계예규」의 관련 회계처리지침 등을 신설 및 개정할 예정이다.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디브레인 시스템 또한 결산체계 개편안이 재무제표 작성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2개년도(2024~2025)에 걸쳐 개편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개편안에 따라서 계정과목을 신설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디브레인 개편의 핵심으로 볼 수 있으며, 시스템 개편 1단계에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와 관련 사항을 개발할 예정이며, 2단계에서는 기타 주식 관련 사항 개발과 시스템의 안정화 등 전체 내용의 수정 및 보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시스템을 전면 오픈하여 2025회계연도 개편 국가결산보고서가 차질 없이 작성되고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유토론 김광윤 명예교수, 아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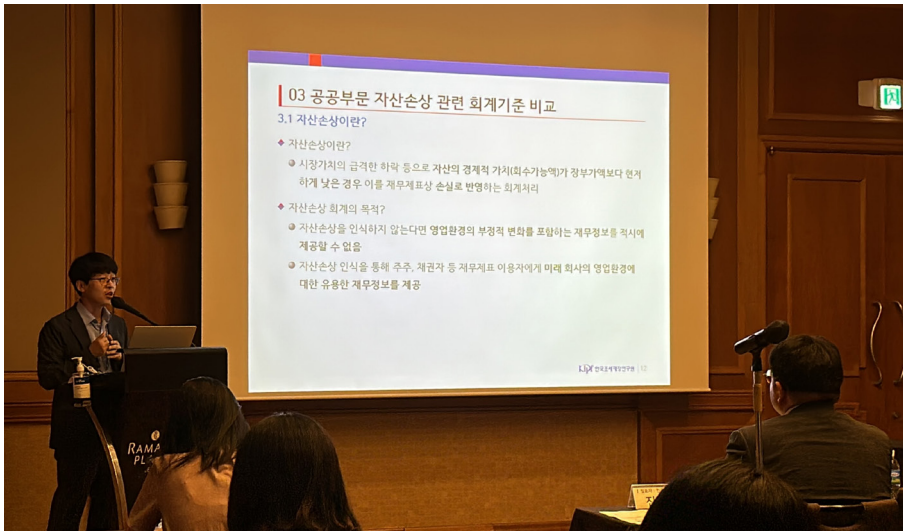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게 지나고 국가부채를 산출하고 있지만, 행정부는 재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표 등을 국가부채가 아닌 국가채무만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제 비교 목적으로 산출하는 일반정부 부채(D2)나 재무제표상 국가부채와 달리 국제 비교에도 사용할 수 없고, 연금부채 등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가 부채는 관리하지 않고 채무만 관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와 입법부 등이 노력하여 국가의 재정을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발표 2 공공부문 자산손상 회계이슈에 관한 연구(박윤진 재정통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근 코로나19 영향,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공공성 확대 등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요금인상의 결정권한이 없어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속된 영업손실은 외부 회계감사 시 유·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문제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자산손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산손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발표에서 공공부문의 자산손상 회계이슈를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하였다.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손상 관련 회계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를 통해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별도의 손상규정 마련 및 IPSAS의 비현금창출자산 개념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공공기관마다 사업특성(공공성, 사업구조)이 모두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자산손상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각 기관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발표 3**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저량-유량 조정을 중심으로**
(윤영훈 국가회계연구TFT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주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재정수지적자의 감소를 통해 국가채무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일반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채무 및 재정수지의 수준에 수치적인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정책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제약을 의미한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의 체계를 강화하고,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며, 정부 재정정책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의 채무 저량(stock)의 변동은 재정수지적자인 유량(flow)에서 유래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위의 항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며, 채무의 증가가 재정수지적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저량-유량 조정(stock-flow adjustment: SFA)으로 정의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대상이 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운영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재정수지 산출의 포괄범위로 중앙정부만을 포함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있어, 일반정부 단위의 세입과 세출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재정수지를 산출할 때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 단계에서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한다. 셋째, 국가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 관리기금 등이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정부의 포괄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대상이 되는 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재정안정성에 대한 국제 비교가 가능한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 부채와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현황 및 특징을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현금주의 재정통계와 구분하여 발표한다.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산출 대상 정부의 범위가 동일하며, 거래의 경제 유량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기간 말의 저량을 산출할 때 회계기간 초의 저량에서 회계기간 중의 유량을 통해 계산하므로,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 간의 결합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의 관계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표를 관리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일반정부 부채의 변동과 재정수지의 차이를 의미하는 저량-유량 조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한다. 저량-유량 조정의 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저량-유량 조정 관련 현황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등과 유사하게 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누적 재정수지흑자로 인해 누적 저량-유량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의 도입과 저량-유량 조정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준칙의 도입 시 저량-유량 조정을 통해 일반정부 부채의 변동과 재정수지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저량-유량 조정이 일반정부 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정수지적자와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적자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을 검토할 때, 둘의 차이인 저량-유량 조정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